

학부(학과)조정 및 학생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8. 31.
개정 2016. 6. 23. 개정 2016. 7.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부(학과)조정 및 학생 정원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5조에 규정된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에 적용한다. <개정 2013.7.1.>

제3조(정의) ① 평가는 학부(학과)조정 및 정원조정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학부(학과)종합평가를 말한다.

② 학부(학과)조정은 학부(학과)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부(학과)의 신설, 폐지, 세부 전공명 변경과 본교의 총 정원의 조정 등을 말한다.

1.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학부(학과) 및 전공의 신설 및 통합
2. 대학의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부(학과) 및 전공의 신설, 통합
3. 기존 학부(학과) 및 전공의 분리, 폐지
4. 본교 입학정원 조정

③ 학생 정원조정은 학부(학과)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 학부(학과)간, 또는 학부(학과)내의 세부 전공간의 정원의 조정을 말한다.

1. 매년 관할청의 학생정원 자체 조정계획에 따른 자체 정원조정
2. 세부 특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학부(학과) 및 전공 정원조정
3. 기존 학부(학과) 및 전공의 분리, 폐지 등에 따른 정원조정

제4조(구조개선위원회 및 주관부서) ① 학부(학과)조정 및 정원조정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구조개선 위원회를 둔다.

② 구조개선위원회 위원은 교무위원회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5.8.31., 2016.7.28.>

③ 학부(학과)조정 및 학생정원조정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되, 학생정원조정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교학처, 입학홍보처와 협의에 의해 진행한다. <개정 2015.8.31., 2016.7.28.>

제5조(대상, 시기와 절차) ① 평가는 전체 학부(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설 학부(학과)와 학부(학과)의 전공을 개편된 경우 편제완성년도까지 유예하며, 단순한 학부(학과) 및 전공 명칭변경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평가 시기는 매년 4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3.7.1.>

③ 학부(학과)조정 및 정원조정은 구조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학부(학과)조정결과 학부(학과) 폐지의 경우는 반드시 학칙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학부(학과) 신설 및 폐지에 따라 교원인사담당부서에 교수변화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학처에서는 매년 자체정원조정계획 시행 후, 필요시 관할청에 확정된 사항을 보고한다. <개정 2013.7.1.>

제6조(평가항목 및 기준) ① 평가항목, 기준 및 평가 목적별 지표적용여부는 별지1과 같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23.>

②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의 평가항목은 각 지표의 당해 연도 실적과 전년도 실적으로 하고, 학과수급전망 및 인력수급전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활용한다. <개정 2014.3.1.>

③ 학부(학과)내 전공명 변경 및 통합의 경우에는 해당 학부(학과)의 신청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부(학과)에서는 전공명 변경 및 통합에 따른 타당성 있는 자료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외신뢰도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명칭변경에 타당성이 결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6.7.28.>

제7조(평가방법) ① 신설의 경우, 학부(학과) 신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며, 100분의 70이상을 획득한 경우 신설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설 시 최소 목표 설정 점수 미만인 경우 폐지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23.>

1. 신설학부(학과)에 대한 학부(학과)의견(10%)
2. 신설학부(학과)에 대한 기획조정실, 교학처, 입학홍보처 의견(70%) <개정 2013.7.1., 2015.8.31., 2016.7.28.>
3. 학과수급전망(10%) <개정 2013.7.1.>
4. 인력수급전망(10%) <개정 2013.7.1.>

② 조정 및 폐과는 잠재력 평가와 역량 평가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획득 점수에 따른 평가 결과 활용은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6.6.23.>

1. 잠재력 평가 : 규모(50%), 성장성(50%) <개정 2016.6.23.>
2. 역량 평가 : 교육역량(40%), 산학연구역량(20%), 교육성과(40%) <개정 2016.6.23.>
3. 잠재력 평가의 경우, 각 지표에 대해 각각 50%로 한다. <개정 2016.6.23.>
4. 역량 평가의 경우, 각 지표에 대해 교내 평가 60%, 교외 평가 40%로 한다. <신설 2016.6.23.>

③ 평가항목의 세부 기준은 별지1(평가항목 기준)과 별지2(평가방법)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23.>

제8조(평가결과에 따른 분류) ① 평가결과에 따라 학부(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90점 이상 : A 등급(집중육성 및 투자)
2. 80점 이상 : B 등급(학과 발전방향 조정 및 투자)

3. 70점 이상 : C 등급(선택적 투자)
4. 69점 이하 : D 등급(최우선 정원조정 대상)

[전문개정 2016.6.23.]

제9조(평가결과 활용) ① 평가결과 활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A 등급 : 정원 최우선 증원대상
2. B 등급 : 정원 증원 대상
3. C 등급 : 현 정원 유지 혹은 감축 대상
4. D 등급 : 정원 최우선 감축 대상, 단 감축 시 정원 최대 15% 이내로 하되, 5명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평가결과에 따른 행·재정 지원)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행·재정지원 시 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최소전공인원) 학부(학과) 및 전공을 유지하기 위한 정원은 다음 각 호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학부(학과) 단위 : 25명 <개정 2013.7.1.>
2. 전공 단위 : 20명 <개정 2013.7.1.>

제 12 조 (학부(학과) 및 전공 폐지) ①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학부(학과) 및 전공을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13.7.1., 2014.3.1.>

1. <삭제 2014.3.1>
2. <삭제 2014.3.1>

② 학부(학과) 및 전공의 폐지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자구 노력을 전제로 1년간 유예를 할 수 있다.<개정 2014.3.1.>

③ 학부(학과) 및 전공 폐지 시 폐지 위험 경고제를 적용하며, 폐지 위험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학부(학과)는 폐지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6.23.>

④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이 동시에 각각 50% 미만인 학부(과)는 폐지 할 수 있다. <신설 2016.6.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부(학과)평가 최초 실시는 2013년 5월로 하며, 지표별 기준년도는 2011년과 2012년도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4조(구조개선위원회 및 주관부서) ②항, ③항, 제5조(대상,시기와 절차) ④항, 제6조(평가항목 및 기준) ③항, 제7조(평가방법) 2호의 기획처 명칭은 '기획홍보처' 로 교무처 명칭은 '교학처' 로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4조(구조개선위원회 및 주관부서) ②항, ③항, 제6조(평가항목 및 기준) ③항, 제7조(평가방법) 2호의 기획홍보처 명칭은 '기획처' 로 입학처 명칭은 '입학홍보처' 로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4조(구조개선위원회 및 주관부서) ②항, ③항, 제6조(평가항목 및 기준) ③항, 제7조(평가방법) 1항 2호의 기획처는 '기획조정실' 로, 기획처장은 '기획조정실장' 으 로 개정한다.

[별지1] <개정 2013.7.1., 2014.3.1., 2016.6.23.>

평가항목 기준

평가	영역	지표명	구분	대내 (60%)	대외 (40%)	산출방법 또는 기준	배점	
요양평가	교육 40	신입생 총원률	조정, 폐지	○	○	정원 내 입학자 / 정원 내 입학정원	25	
		중도 탈락률	조정, 폐지	○		중도탈락자 / 편제정원	15	
	산학연구 20	교외연구비	조정, 폐지	○	○	(교외연구비 + 교외대응자금) / 전임교원 수	8	
		연구논문 / 지역서실적	조정, 폐지	○	○	{(국내논문 수 x 0.4) + (국제논문 수 x 0.6)} / 전임교원 수 x 0.5 + {(저서+역서 수) / 전임교원 수} x 0.5	6	
		산학공동 연구비 / 건수	조정, 폐지	○	○	{(교외민간 연구비 + 교외외국 연구비) / 전임교원 수} x 0.5 + {(교외민간 연구 건수 + 교외외국 연구 건수) / 전임교원 수} x 0.5	6	
	성과 40	재학생 총원율	조정, 폐지	○		(정원내재학생 / 편제정원) x 0.8 + (정원내·외 재학생 / 편제정원) x 0.2	20	
		취업률	조정, 폐지	○	○	12.31 기준 취업자 / 졸업생 중 취업대상자	20	
	잠재력평가	조정 폐지	규모	조정, 폐지			학과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통계자료 취업자 규모 적용(전체 T점수화 평가)	50
			성장성	조정, 폐지			학과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통계 자료 취업자 증가율 적용(전체 T점수화 평가)	50
	신설	신설	학과수급전망	신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자료 참고	
인력수급전망			신설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 관련자료 참고		

※ 공시지침(시기 등) 변경 시에는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 공시기준 전년도 40%, 당해 연도 60%로 반영한다.

[별지2] <개정 2013.7.1., 2014.3.1., 2016.6.23.>

평가방법

1. 신설의 경우

항목	배점	A	B	C	D	E	비고
학부(학과) 의견	10	10	8	6	4	2	학과 신설계획을 구조개선위원회에서 평가
본부부서 의견	70	70	60	50	40	30	본부부서의 학과신설계획에 대한 의견을 구조개선위원회에서 평가
학과수급 전망	10	10	8	6	4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자료를 참고 구조개선위원회에서 평가
인력수급 전망	10	10	8	6	4	2	중장기인력수급전망 등 관련 자료를 참고 구조개선위원회에서 평가

2. 조정, 폐지의 경우

평가	영역	항목	배점	구분	A	B	C	D	E	비고
역량 평가	교육 (40)	신입생 총원율	20	점수	20	15	10	5	1	- 신입생총원율 100% 기준 - 80%미만은 1점
				실적(%)	100	95~	90~	85~	80~	
		중도 탈락률	15	점수	15	13	12	10	8	
				실적(%)	0	5~	10~	15~	20~	
	산학연구 (20)	교외 연구비	8	점수	8	5	3	2	1	
				실적(%)	100	95~	90~	85~	80~	
		연구논문 /지역서 실적	6	점수	6	5	4	3	2	
				실적(%)	100	95~	90~	85~	80~	
		산학공동 연구비 / 건수	6	점수	6	5	4	3	2	
				실적(%)	100	95~	90~	85~	80~	
	성과 (40)	재학생 총원율	20	점수	20	15	10	5	1	- 재학생총원율 100% 기준 - 80%미만은 1점
				실적(%)	100	95~	90~	85~	80~	
	취업률	20	점수	20	15	10	5	1	- 취업률 100% 기준 - 80	
			실적(%)	100	95~	90~	85~	80~		
잠재력 평가	규모·성장성 (100)	규모	50	점수	50	40	30	20	10	- 규모 100% 기준 - 50%미만은 15점
				실적(%)	100	95~	90~	85~	80~	
		성장성	50	점수	50	40	30	20	10	- 성장성 100% 기준 - 80%미만은 6점
				실적(%)	100	95~	90~	85~	80~	

※ 공시기준 전년도 40%, 당해 연도 60%로 반영한다.